

제354회 임시회  
2017. 2. 21.(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광희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2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4일

3. 개정이유

-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을 개정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함.

4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용도 확대 (안 제3조의2)

-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을 자활근로사업단 까지 확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항 변경 (안 제5조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→ 제3조

다. 광역자활센터 전세금 대여 조항 신설 (안 제8조의2)

라.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(안 제9조)

- 용어 개정 : 이차보전(利差補填) →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

마.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 규정 (안 제11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출 배경

- 충청북도자활기금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참여자 및 종사,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으며, 2016년도 말 2,013,459천원이 조성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은 충북광역자활센터 및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와 의 간담회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### 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안 제3조제3호에는, 용어 ‘도지사’가 최초로 사용된 바, 이의 약칭 사용을 규정함.
- 안 제3조의2에는, ‘충청북도’의 약칭 사용을 규정하고, 같은 조 제6호에서 전문가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대상을 기존 ‘자활기업’에서 ‘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’으로 확대함.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지원대상의 확대는 법적으로 타당함.
  - 특히, 저소득층(수급자 포함)의 자활을 위해 광역 단위(2개 이상 시·군을 포괄하는 사업)의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

커지고 있는 바, 본 개정으로 인해 광역 차원의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5조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규정을 인용한 ‘영 제3조의2’를 ‘영 제3조’로 개정함.

**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**

**제3조(차상위계층)** 법 제2조제10호에서 "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"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[제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<2015.4.20.>]

**제3조의2** [제3조로 이동 <2015.4.20.>]

- 안 제8조에는, 자금 대여 대상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도 포함되어 있는 바, 조 제목을 ‘자활기업에’를 ‘자활기업 등에’로 개정하고, ‘전세점포 임대자금’이란 용어를 ‘점포 전세금’으로 개정함.
  - ‘전세점포’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, 또한, 임대(賃貸)란 : ‘돈을 받고 자기 건물 등을 빌려주는 일’로, 용어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. 즉, 본 조항에서는 자활기업이 점포를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, ‘임차 보증금’이나 ‘전세금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. 따라서, ‘전세점포 임대자금’을 ‘점포 전세금’으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8조의2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, 광역 차원의 자활지원사업을 기획, 추진하는 광역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안 제9조에는, ‘이차보전(利差補填)’이란 용어를 ‘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’이란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.
- 안 제11조에는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.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북도 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고,
- 절차상, 사전 유관단체인 충북광역자활센터 및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지부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, 또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